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4월 9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가. 인천시민의 문화적 성숙과 최적의 인천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천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나. 최근 재단 운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적립기금의 이자율 하락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운영비 재원에 대한 제한과 지원조항의 미비로 인해 대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임
- 다. 따라서, 문화재단 수익사업 범위와 운영재원 조성방법을 현실화하고 타시도와 마찬가지로 시장이 문화재단에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수익금을 운영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나. 토지 등 현물을 기본재산에 포함하여 수익금 증대 도모(안 제7조)
- 다. “기본재산 운용수입금”과 “특정사업을 지정하지 않은 기부금”을 운영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라. 타시도와 같이 시장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1(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032-440-6224, 팩스 032-440-8764, 이메일 thisman7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않은”을 “설립목적의”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기본재산의 조성)”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현물
3. 그 밖의 현물

제9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본재산 운용수입금
3. 기부금

제9조제3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1조 중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을 “운영비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수익사업) 재단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않은 범위안 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수익사업) ----- <u>설립목적</u> <u>의</u> ----- ----- ----- -----.
제7조(<u>기본재산의 조성</u>) (생략) <u><신설></u>	제7조(<u>기본재산</u>) ① (현행과 같음) ② <u>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u>기금</u> 2.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현물</u> 3. <u>그 밖의 현물</u>
제9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3. (생략) 4. <u>기타</u> 수입금 등 ② (생략) ③ <u>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u> 1. (생략) 2. <u>기금의 이자 수입금</u>	제9조(기금의 조성)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u>그 밖의</u>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u>기본재산 운용수입금</u>

3. <u>특정사업에 지정된 조건부 기부금</u> 4. <u>기타</u> 수입금 등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단 설립비용 및 <u>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사업비를</u> 지원 할 수 있다.	3. <u>기부금</u> 4. <u>그 밖의</u> ---- 제11조(재정지원) ----- ----- ---- <u>운영비와</u> ----- ----- -.
--	---

[별첨1]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문화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1조(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 제13조(문화 진흥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 ▣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2조(문화영향평가의 대상 등)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련 법령 발췌 사항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公款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문화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한 국민의 문화 향유권의 확대를 위하여 문화 향유와 관련한 실태조사와 관련 조사·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문화정책의 조사·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고 그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개발하는 전담기관과 이를 지원하는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문화 진흥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한 민간의 재원 조성 및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2조(문화영향평가의 대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문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영향평가를 하는 계획 또는 정책에 대해서는 문화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문화영향평가 대상 계획·정책의 선정기준, 문화영향평가의 방법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과 정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2. 제3조에 따른 협력체계를 통한 협의를 거쳐 문화영향평가를 하기로

한 경우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소관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할 때 대상 계획·정책의 개요와 기대효과, 평가의 필요성 등을 포함한 평가요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개발하는 전담기관(이하 이 조에서 "조사·연구·개발 전담기관"이라 한다)과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문화 분야의 정책연구 또는 정보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조사·연구·개발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산업의 육성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2. 문화복지를 위한 환경 조성에 관한 조사·연구
3. 문화유산·전통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4. 여가문화에 관한 조사·연구
5. 민족문화 동질성 회복에 관한 조사·연구
6.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련 정책정보의 분석·제공 사업
7. 조사·연구 결과의 출판 및 홍보
8.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관련 정책연구 성과와 연계된 교육사업
9. 그 밖에 문화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문화정보화 사업의 지원
2. 문화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 위탁하는 사무
3. 문화정보화 추진 및 촉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훈련
4.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관련 단체에 대한 문화정보화 전문기술 지원
5.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대국민 통합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온라인상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운영
7. 통계시스템을 통한 문화 분야 각종 조사 결과와 통계정보의 통합관리
8. 그 밖에 문화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조사·연구·개발 전담기관과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첨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 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현재 비용 발생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1호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현재 비용 발생요인이 없음

4. 작성자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장 이형균